

총괄표

※ 매립지 반입료, 중간처리비 및 부가가치세 제외

구분			30km	35km	40km	50km	60km	비고		
24톤덤프트럭	중간처리	대상폐기물	중량기준 (1ton)	상차비	2,016	2,016	2,016	2,016	대당 24톤	
				운반비	11,562	12,923	14,219	16,905		19,531
				계	13,578	14,939	16,235	18,921		21,547
		적재부피기준 (1m³)	상차비	3,219	3,219	3,219	3,219	3,219	대당15.03 m³ 과채후 적재부피 기준	
			운반비	18,462	20,636	22,706	26,994	31,187		
			계	21,681	23,855	25,925	30,213	34,406		
		구조물부피기준 (1m³)	상차비	4,637	4,637	4,637	4,637	4,637	대당24톤 과채전 구조물부피 기준	
			운반비	26,593	29,723	32,704	38,882	44,921		
			계	31,230	34,360	37,341	43,519	49,558		
24톤암물트럭	매립지반입	대상폐기물	중량기준 (1ton)	상차비	3,330	3,330	3,330	3,330	대당 18.9톤	
				운반비	40,693	43,485	46,138	52,075		57,409
				계	44,023	46,815	49,468	55,405		60,739
		부피기준 (1m³)	상차비	2,098	2,098	2,098	2,098	2,098	대당 30m³	
			운반비	25,637	27,395	29,067	32,807	36,168		
			계	27,735	29,493	31,165	34,905	38,266		
15톤덤프트럭	중간처리	대상폐기물	중량기준 (1ton)	상차비	2,016	2,016	2,016	2,016	대당 15톤	
				운반비	13,210	14,850	16,565	20,003		23,284
				계	15,226	16,866	18,581	22,019		25,300
		적재부피기준 (1m³)	상차비	3,220	3,220	3,220	3,220	3,220	대당9.39m³ 과채후 적재부피 기준	
			운반비	21,102	23,722	26,461	31,954	37,195		
			계	24,322	26,942	29,681	35,174	40,415		
		구조물부피기준 (1m³)	상차비	4,637	4,637	4,637	4,637	4,637	대당15톤 과채전 구조물부피 기준	
			운반비	30,383	34,155	38,100	46,007	53,553		
			계	35,020	38,792	42,737	50,644	58,190		
16톤암물트럭	매립지반입	대상폐기물	중량기준 (1ton)	상차비	3,330	3,330	3,330	3,330	대당 12.6톤	
				운반비	49,166	52,822	57,293	64,802		73,383
				계	52,496	56,152	60,623	68,132		76,713
		부피기준 (1m³)	상차비	2,098	2,098	2,098	2,098	2,098	대당 20m³	
			운반비	30,975	33,278	36,095	40,825	46,231		
			계	33,073	35,376	38,193	42,923	48,329		

- 주) 1. 본 처리단가는 "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"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"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" 제6조,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19호(2016.12.30) "예정가격 작성기준", 행정자치부예규 제70호(2016.11.14) "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" 등 예정가격 산출기준 관련 법령에 의거 산출되었음.
2. 동 처리단가는 "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"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, 경유가, 노임, 원부자재, 수리수선비, 소모품료 등의 기준과 2017년 표준품셈을 반영하여 원가계산한 결과임.
3. 상기 단가는 이윤, 일반관리비가 포함되어있으며, 매립지반입료, 중간처리비 및 부가가치세는 제외된 금액임
4. 중간처리대상 폐기물의 경우 적재부피의 비중은 호트러진상태로서 1.6 톤/m³, 구조물부피의 비중은 파쇄전상태로서 2.3 톤/m³을 기준으로 하였으며,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의 경우 비중은 0.63톤/m³을 기준으로 하였음.
5. 운반 차량은 24톤 덤프트럭(적재 용량 15.03m³), 24톤 암물트럭(적재용 용량 30m³)을 기준으로 하였으며, 15톤 덤프트럭(적재용 용량 9.39m³), 16톤 암물트럭(적재용 용량 20m³)을 기준으로 한 단가도 참고로 게재하였음
6. 거리는 편도 거리를 기준으로 왕복 비용으로 계산하였음.
7. 매립지반입료 산출은 중량기준일 경우에는 수집운반비(톤)+반입료전액(톤), 부피기준일 경우에는 수집운반비(m³)+[반입료전액(톤)×비중(0.63톤/m³)]
8. 상기 단가는 성상의 형태(분리된 상태), 지역에 따라 단가가 변동될 수 있으며, 30km이하는 30km 금액을 기본으로 함.
9. 운반거리가 60km를 초과하거나 적용거리 중간에 있을 경우 적용단가는 직선보간법에의하여 산정함.
(60km를초과하는경우50km와60km사이의금액을km당으로환산한금액을초과거리에곱하여가산함)

예시) 중간처리대상폐기물 60km이상 km당 단가: [19,531(60km운반비)-16,905(50km운반비)] ÷ 10km = 263원
- 70km 중간처리대상폐기물의 운반비는 19,531(60km운반비)+263 × 10km = 22,161원